2017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유엔해양법협약 제244조의 자료, 정보, 지식의 범위*

이창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e Scope of information, data, and knowledge in the article 244 of the UNCLOS

Changyoul Lee*
*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핵심용어 : 해양과학조사, 자료, 정보, 지식, 출판과 보급
Key Words : Marine Scientific Research, Data, Information, Knowledg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1. 서 론

지난 2016년~2017년까지 유엔총회 69/292 결의에 따라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이하 '준비위원회') 4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협약 제244조가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자료, 정보, 지식의 출판 및 보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한 연구의 정보, 자료, 지식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실제로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연구결과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해양과학조사의 지리적 범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은 지리적 또는 공간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배타적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해양과학조사는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과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육지에서의 과학연구에 대한 근거법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과학조사에 대한 근거법이다. 해양 자체 또는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연구라 할지라도 해양과학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지리적 또는 공간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해양과학조사 이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순한 결과자료 처리와 분석은 해양과학조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유전자원연구와 같이 연구대상만 해양일 경우는 해양과학조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244조 제2항의 정보, 자료, 지식은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전자원연구와 같이 육상에서 이루어진 과학연구로부터 새롭게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공간적 또는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해양과학조사와 생물탐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에 생물탐사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생물탐사의 범위는 유전자원연구에서 상업화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확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 없이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생물탐사를 포함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생물탐사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간적 또는 지리적 범위를 나누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채집 등의 활동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 활동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요구된다.

4. 결 론

협약 제2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보 및 지식의 출판과 보급의 의무는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일차적 연구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차적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이창열 : winkstone@kiost.ac.kr, 051-664-3732

※ 이 원고는 해양과학기술원 PE99536 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발표를 위한 초고로써 추후 수정을 통하여 정식 발간할 예정이므로 인용을 삼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 견해일뿐 해양과학기술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